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59
----------	-------

발의연월일 : 2026. 6. 24.

발 의 자 : 민홍철 · 문대림 · 문진석
허성무 · 김문수 · 윤종근
이언주 · 문정복 · 손명수
김태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월 현행법 제정으로 철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을 연계·통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심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다만, 도시철도는 국유철도와 도시철도 간 계획수립 주체 등의 차이로 인해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런데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 등의 문제는 도시철도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지하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도시철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의 통합개발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중 제4조”를 “제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으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철도에 대하여 각각 철도지하화통합개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철도산업위원회”를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철도산업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종전의 제5항) 중 “수립하거나 변경”을 “수립·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승인”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도시교통권역(「도시철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철도부지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2. 시·도지사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이하 “도시철도”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계획은 도시철도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계획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

④ 시·도지사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승인하려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제5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도시철도에 관한 기본계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9조 중 “국유재산”을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자”를 “자 또는 「도시철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공사”로 한다.

제10조 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철도법」”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국유재산”을 “국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으로,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철도시설”을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로, “국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제1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으
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4. “<u>철도지하화사업</u>”이란 「<u>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u>고속철도</u>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u>일반철도</u> 중 제4조에 따른 <u>철도지하화통합개발</u>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말한다.</p> <p>5. (생 략)</p> <p>제4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① <u>국토교통부장관</u>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u>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u>(이하 “<u>종합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4조</u>----- ----- ----- -----.</p> <p>5. (현행과 같음)</p> <p>제4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①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이하 “<u>시·도지사</u>”라 한다)는----- -----<u>다음</u> <u>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철도에 대하여 각각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u>-----</p>

<신 설>

<신 설>

<신 설>

6.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후 「철도 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

10.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철도산업위원회”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내용)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효과적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승인하려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

⑦ -----
---수립·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승인-----

-----.

제5조(종합계획의 내용) -----

-----.

1. ~ 4. (현행과 같음)
5.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6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
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
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
우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
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선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
역시·도·특별자치도의 행정
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도지
사 간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철도지하화사업 기본
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수립한다.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제6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

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
계획(도시철도에 관한 기본계
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